

보 고 사 항

□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사항

-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7. 7. 18

(화순군의회 공고 1997 - 6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'97. 7. 22 (화) 10:00
- 장 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제55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

-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1 호

-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2 호

-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3 호

-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4 호

-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
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5 호

- 화순군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6 호

-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7 호

-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8 호

-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89 호

-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0 호

-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1 호

-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2 호

-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3 호

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4 호

-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5 호

-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6 호

-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7 호

-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8 호

-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499 호

-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0 호

-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1 호

-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2 호
-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3 호
-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4 호
-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5 호
-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6 호
-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7 호
-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8 호
-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○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09 호

-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10 호

-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11 호

-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 6. 30 집행부 이송
 - 공 포 일 자 : '97. 7. 1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제 1512 호

□ 각종의안발의 및 제출현황

-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- '97. 7. 18 발의
 - 발의자 : 박 병 옥 의원외 3 인
 - 회 기 : '97. 7. 22 ~ 7. 29 (8 일간)

-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- '97. 7. 18 발의
 - 발의자 : 박 병 옥 의원외 3 인
 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
- '97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 - '97. 7. 18 발의
 - 발의자 : 박 병 옥 의원외 3 인
 - 보고요구내용 : 별 첨

- 댐 피해 보상촉구 결의안 - '97. 7. 18 발의
 - 발의자 : 김 경 남 의원외 4 인
 - 결의안 : 별 첨

○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- '97.7.9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기준

(일반기준)

- 위반행위가 2 이상일때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.
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경우에 적용한다.
- 영업의 양도,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승계한다.

(개별기준)

(단위:만원)

위 반 내 용	관련조항	과 태 료		
		1 차	2 차	3 차
담배 자판기 설치자가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때	법 제9조 제2항	10	30	50
19세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	법 제9조 제3항	10	20	50
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때	법 제9조 제4항	20	30	50
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있는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	법제12조 제2항	20	30	50

○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7.7.9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따라 기부행위(주민성금, 기관단체기탁금)부분을 삭제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체육진흥기금 정의 변경 (제2조 제2항 및 제3항)

· 주민성금 → 삭 제

- 기금의 조성 (제4조 제2항)

· 주민 및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→ 삭 제

○ 화순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- '97.7.11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('96.8.2 건설교통부령 제74호)으로 관련조항 신설.

○ 개정근거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

○ 주요골자

제3조 별표1중 15호를 16호로하고 15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(별표1)

화순군제증명수수료요율표

구 분	기 준	수 수수료	비 고
15.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			
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(서식)	1 필지	400원	조사년도 구분하여 필지당 징수
② 토지 (임야) 대장 등본에 기재	1 필지	300원	

○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- '97.7.11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내용중 현실과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고 양수기 사용료 오류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보관관리 책임

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.

- 사용료

· 양수기 : 양수기 규격별 기계가격(원) × 3,375 × 10⁻⁴ × 10 × 2/3

· 발동기 : 발동기 규격별 기계가격(원) × 3,435 × 10⁻⁴ × 10 × 2/3

○ '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- '97.7.15 군수제출

○ 대상토지 : 화순읍 훈리 26 -1 (대지 4,349 m²)

○ 교환요청면적 : 약 670평 (요구면적 약 700평) - 별첨 도면참조

○ 교환대상부지 : 현 등기소 353 평 (건평 95 평)

○ 교환조건

- 별첨 도면의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 부지를 감정평가에의거 산정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

※ 법원측의 토지교환 필요성

· 민원해소를 위해서 군청과 최단거리 위치

· 현 등기소 부지는 협소하여 민원 수행에 어려움

· 화순군청, 교육청, 전화국, 전매공사등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최적지

○ 군의 의견

-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광주지방법원에서 요구한 바와같이 본 토지를 교환하여

- 현 등기소는 별도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남은토지 약 600여평은 교환시 차액으로 정비하여 군청직원의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함.

○ '97.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- '97.7.17 군수제출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증감	
합계	119,357,353	100.0	117,680,050	100.0	1,677,303	
세입	지방세	7,558,300	6.3	7,558,300	6.4	0
	세외수입	30,949,150	25.9	30,942,150	26.3	7,000
	경상적 세외수입	8,848,233	7.4	8,848,233	7.5	0
	임시적 세외수입	22,100,917	18.5	22,093,917	18.8	7,000
	지방교부세	38,250,000	32.1	38,250,000	32.5	0
	지방양여금	11,786,905	9.9	11,786,905	10.0	0
	보조금	29,952,998	25.1	28,282,695	24.1	1,670,303
	국고보조금	20,488,140	17.2	19,741,870	16.8	746,270
	시·도비보조금	9,464,858	7.9	8,540,825	7.3	924,033
	지방채	860,000	0.7	860,000	0.7	0
세출	경상예산	35,645,745	29.9	35,606,213	30.3	39,532
	인건비	16,857,995	14.1	16,857,995	14.3	0
	관서운영비	790,338	0.7	831,841	0.7	△ 41,503
	경상적경비	17,997,412	15.1	17,916,377	15.3	81,035
	사업예산	73,634,802	61.6	67,952,064	57.7	5,682,738
	국고보조사업	29,522,732	24.7	28,620,994	24.3	901,738
	지방양여금사업	13,889,982	11.6	13,889,982	11.8	0
	시·도비보조금	9,105,203	7.6	8,139,264	6.9	965,939
	자체사업	21,116,885	17.7	17,301,824	14.7	3,815,061
	채무상환	3,998,863	3.4	3,998,863	3.4	0
기타(국내)상환	3,998,863	3.4	3,998,863	3.4	0	
예비비	6,077,943	5.1	10,122,910	8.6	△ 4,044,967	
예비비	2,677,078	2.2	6,725,149	5.7	△ 4,048,071	
기타	3,400,865	2.9	3,397,761	0	3,104	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- '97.7.18 의원발의

주 문

○ 화순군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'97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를 구성한다.

○ 활동기간 : '97. 7. 22 ~ 7. 29 (8 일간)

○ 구성인원 : 4 명

제안이유

○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'97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정대비 1,677 백만원 증액편성한 예산으로서

○ 본 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

○ 주문과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한 후 이를 본 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같이 제안함.

□ 민원서류 접수현황

○ 이양 강성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진정 - '97. 7. 12

○ 진정인 : 이양면 매정리 안 규 오 외 805 명

○ 폐기물 처리장 사업예정 현황

- 예정지 : 이양면 강성리 280 번지 외 9필지 11, 950 m²

- 출원인 : 미래환경 사업개발(주) 대표이사 김 용 배

- 처리대상 폐기물 : 건축물 폐자재류

○ 반대이유

- 화순군은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쓰레기장이될수 없습니다.
- 건설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얻어 일개인의 이익보다는 화순군민 절대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여야 합니다.
- 한천면에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 기 존재하여 더이상의 폐기물처리장은 필요치 않습니다.
- 이양면 전역이 폐광으로 연결되어 쓰레기 처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식수원이 오염 됩니다.

□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회기결정의 건
2. 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
3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4. '97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요구의 건
5. '97. 제2회 세입·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
6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(안)

○ 회 기: '97. 7. 22(火) ~ 7. 29(火) (8일간)

월 일	부 의 안 건	비 고
97. 7. 22. (火)	<p>개 회 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기결정의 건 2. '97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 3. 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4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. '97. 제2회 세입·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	<p>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</p> <p>- 위원장, 간사 선출</p>
97. 7. 23. (水)	휴 회	<p>○ 상임위원회 활동</p> <p>- 조례안 심사</p> <p>- 실·과·소 예산안 예비심사</p>
97. 7. 24. (木) 10:0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'97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<p>(기획감사실, 경영정책실, 문화공보실, 민원봉사실, 내무과, 재무과)</p>	
97. 7. 25. (金) 10:0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'97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<p>(지적과, 사회복지과, 환경보호과, 산업과, 산림과, 지역경제과, 건설과)</p>	

월 일	부 의 안 건	비 고
97. 7. 26. (土) 10:00	휴 회	○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 - 예산안 심사
97. 7. 27. (日)	휴 회	
97. 7. 28. (月) 10:00	1. '97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청취의 건 (도시과, 민방위재난관리과, 농촌지도소, 보건소, 온천개발사업소,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)	
97. 7. 29. (火) 10:00	1.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2.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3.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.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. 댐 관련 피해보상촉구 결의안 6. '97.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. '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8. 기타일반안건	